<합의라는 폭력: 피해자 없는 외교적 합의의 반복>

2강

한일관계를 회복한다며 피해자가 장작되는 과정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순서

- 1. 연사소개 / 강좌의 '톤'
- 2. 강제동원 문제의 4개 시기 구분
- 3.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 4. 문재인 정부의 공허한 피해자 중심주의
- 5. 윤석열 정부의 이유모를 신념

1/ 면사소개/ﷺ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소송 대리인 등 제주 4·3 수형인 피해자 재심사건 변호인

활동/

한베 평화재단 이사 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간사, 과거사위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1/ 연사소개/ﷺ



1/ 연사소개 /怒의론





1/ 면사소개 /怒则론



1/ 则생 /강좌의 톤

'<u>합의라는 폭력</u>'에 대한 여러 해석, 분석 가능

- '합의'의 법적 정의는 자유로운 의사의/합치.
- 자유로운의사나? 판단할수 있는 충분한정보가제공되고, 여러의사를 표현 할수 있는 상황이나?
- 합치면모두인정되냐?당사가간의권력관계가존재하는근로관계등의경우, 합의가법기준을 위반하면 무효로 봄(최저임금 위반등)
- 그렇다면, 이 합의를 폭력이라고 평가하고 명명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1/ 则생 /강좌의 톤

'<u>피해자 없는 외교적 합의의 반복</u>'이라는 표현

- 피해자는 언제 '없는 것'인가? 합의의 절차인가, 합의의 내용에서인가?
- 외교적합의의 주체를 국가로 본다면, 피해져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대리인 인가, 아니면 보호자인가?

1/ 멘생 /감자의 톤

그러나본강좌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천착하기 보단,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보였던 '피해자 청산'의 과정을 묘시하는 것으로 '톤'을 잡고자 함.

- 1940~1945년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시기
- **1965년** 한일협정(특히 청구권협정)을 통해서 피해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외교적 합의가 체결된 시기 (해석에 대한 이견 존재)
- **1990년 ~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나의 권리'가 1965년에 없어진 것인가를 확인했던 시기.
- **2012년, 특히 2018년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한일정부의 합의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려하는 시기.

일본제철 소송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정리해보죠! (@@

1991. 일본 고마자와 대학 고쇼 타다시 교수

'연행조선인미불금 공탁보고서'를 발표

1997.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1998. 6. 3. 오사카역



- 오사카지방법원 2001. 12. 5. 판결 中

'원고들이 한 노동은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는 사전 설명과는 달리 매우 열악했고, 구체적인 임금도 모른 채 일부만 지급받거나 강제 적으로 저금하였고, 일본제철의 감시하에 노무에서의 이탈도 거의 불가능하고,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열악한 주거환경하에서 가혹하고 지극히 위험한 작업에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상당기간에 걸쳐 종사한 것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2005년 소제기, 1, 2심 모두 패소
- 위소송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
- 민관공동위원회, 청구권협정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포 학되지 않았다 판단
- 2012년 5월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 2013년 서울고등법원 원고 각 1억원씩 승소 판결
- 피고 기업의 재상고.



- 일본 측, 외교부와 김앤장 통해 강한 압박
- 청와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바꿔야 한다 결정하고,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 접촉
-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및 법관해외파견 문제 등과 거래 시도
- 2012년 대법원 파견이 존재했기에, 여러 방안이 고안. 김앤장 이 의견서 신청하면,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하고, 대법원이 전 원합의체 회부하는 식의 그림 구성
- 2013년 시작된 재상고심이 2018년까지 지연된 과정



- 그러나 2017, 2018년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 강제동원 소송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음.



4/됐인정부의공허한 피해자 중심주의

-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 그러나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음.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지 않았을 뿐,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 문재인 정부 내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주체도, 전략도 부재 한 상황의 연속.

4/됐인정부의 공허한 피해자 중심주의

| 6 | 외교부 | 虽 | 자 | | 정부혁신 정부 |
|------|--------------------------------------|----------|--------|--------------|---------|
| 보도일시 | | | 19-400 | | |
| 배포일시 | 2019. 6. 19. (수) | | 담당부서 |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 |
| 담당자 | 이상렬 <u>아시아태평양국</u> 심의관(02-2100-7334) | | | | |
| | | | | | |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

- 1. 작년 10.30 <u>강제징용</u> 문제에 대한 <u>대법원 판결</u>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u>문제해결에</u>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 2. 이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 우리 정부는 <u>일본측이</u>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4/됐인정부의 공허한 피해자 중심주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2019. 8. 6.)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6~8개월 간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

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대리인단 및 지원단은 청와대가 위와 같이 1+1 정부안이 늦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피해 자협의' 운운하면서 핑계를 댔을 때고 침묵하였으나, 비서실장의 국회발언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음.

또한 현재도 이 문제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급한 불 끈 것' 이상인지에 대해 신뢰가 없음. 같은 이유에서 시민사회수석실이 소통창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음.

4/됐인정부의공허한 피해자 중심주의

2019. 7. 일본의 경제보복(수출규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했지만, 정작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진척이 없었음.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고, 결국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일본 측의 부담 없이,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안.

후보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파탄낸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그랜드 바겐', '포괄적 협상'과 같은 표현을 사용.

핵심은 관계개선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인데 그 방안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확인.

그럼에도 '관계개선' 자체가 절대적 목표가 되어버려 모든 것이 빨 려가고 있는 실정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인가

f y ◎ Ø ★ 奇 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콘퍼런스빌딩에서 낮 12시23분부터 약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중 대일본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두 나라 정상이 30분 동안 만난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며그 의미를 축소했고, 최근 정보도 '양시회단'이라고 표정했다. 이제 함의모 이저이라는 정사

정상회담은 양국이 쟁점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과 함께 정권의 성취를 보이기 위해 정상회담 자체에 매달리고 있다. 뉴욕의 괴이한 만남은 주객이 전도된외교 방향이 낳은 사고 중 하나다.

무엇을 주고받을지가 아니라 회담 성사 자체가 지상과제가 된 구도에서 회담을 가로막는 조건들은 장애물일 뿐이다. (…) 외교부는 '속도감'을 강조하며 8월 중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고령인 피해자들과 강제집행 절차가 막바지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피해자분들이 고령인 것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 연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이어온 소송과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민관협의회 종료 이후 나오는 논의를 보면 이 의심이 정확했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의 강경한 입장으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이 문제의 본질에는 조금도 다가서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판결 채권을 소멸시킬 방법에 관한 논의만 남겼을 뿐이다. 이제 청산 대상은 식민지 시기 불법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정상회담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고 정치지도자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이 야기를 서슴없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

주권은 '국가'의 문제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 즉 '사인'에 대한 판결이다. 집행 절차 역시 일본 기업의 한국 영토 내 자산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다. 강제동원 사법절차가 일본국 영토를 침해하거나 일본의 사법권을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일본 정부조차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해온 지난 수년간 '주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주권 문제로 격상시켰다.

현재의 상황

- 한국 정부의 유력안: 한국 기업의 기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 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권리(채권)을 소 멸시킴. 만약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그들이 현재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 해서 집행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할 것임.
- 일본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 정도의 의사표현(사과?)과 한국 재단이 먼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면 사후적으로 피고 기업이 아닌 다른 일본 기업의 기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유력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을 잘 알고 있으나, 정해진 시간표대로 절차를 진행중임.

과거사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가 청산되는 과정. 거부할 수 없음. 무엇을 위해?

